

국가유산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합병 법인	상 호	대 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영업소 소재지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합병 법인	상 호	대 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영업소 소재지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상 호	대 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영업소 소재지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법인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해 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업진단보고서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만 해당합니다)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 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라. 대표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만 해당합니다) 5.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부등본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국가유산실측설계업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제3호의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